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금액 산정방식 변경 등 >
■ 송옥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1227호)

2024. 9.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양육비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 및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명시	3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 연장	6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산정방식 변경	11
※ 참고자료	14
1.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14
2. 양육비 대지급수당 주요 해외 사례	16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송옥주 · 정성호 · 이병진 · 한정애 · 박 정 · 박홍근
부승찬 · 이수진 · 박해철 · 전용기 의원(1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

다. 회 부 일 :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육비 채권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긴급지원의 지급 기간은 9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명령을 얻기 위해서는 평균 18개월~20개월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 역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함으로써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양육비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 및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 마련 명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3년마다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현행	개정안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제5조(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 ① ----- ----- 3년마다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법원은 판결,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양육비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의 판결과 심판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2011년 여성가족부는 서울가정법원과 MOU를 체결하여 자녀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여성가족부에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를 하고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를 참고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음.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산정기준표’ 작성·공표 후 2014년, 2017년 2차례 개정하였고, 2021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를 공표하였음.¹⁾ 그런데,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하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전국 법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아님²⁾.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여성가족부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갈음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양육비 가이드라인 개정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법원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양육비산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상황 등의 변화를 반영한 양육비 산정을 도모하는 한편, 이혼의 대부분이 협의이혼으로, 협의 이혼 시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대해 법원이 적극 개입하여 양육비 결정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서울가정법원은 2020년부터 ‘양육비 산정기준 연구분과’를 발족해 가사사건 담당 판사들을 상대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 작업을 진행해 왔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통계자료(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2019년 가계동향조사 등)를 토대로 작성한 연구보고서와 여성가족부가 발행한 ‘2020년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책자 등을 참조해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 초안과 해설서를 작성하고 2021년 11월 5일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등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2021년 12월 22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였음.

2)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실무상 재판부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표준 양육비 액수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 사건의 내용, 지역사정(예를 들면 소득 규모 등)등에 따라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함.

다만, 개정안은 법원으로 하여금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양육비 산정기준을 작성하여 판결, 심판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이 양육비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사건 당사자인 부모 및 미성년 자녀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 사정에 맞는 판결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충분한 표본을 확보한 양육비용 실증조사는 ‘가족과 출산 조사’가 유일한 상황에서 현재 여성가족부가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별개의 합리적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는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양육비 가이드라인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데 이를 기초로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양육비 산정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법원”이나 양육비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임.

2.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기간 연장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추가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으로써 최대 18개월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12개월----- ----- ----- ---6개월-----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현행법 제14조제1항3)에 따라 양육비 채

-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최대 12개월(9개월 원칙, 3개월 연장 가능)동안 지급할 수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 제8조4)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5)에 대하여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른 금액(자녀 1인당 월 20만원)

⑤ 이행관리원의 장은 긴급지원을 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양육비 채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 채권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1.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5) 기존에는 ①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이거나 ②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을 지급하고 있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 요건 >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예: 자녀의 질병, 실직/폐업, 공과금 연체 등)
 -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중증 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④ 양육비 채권자에게 3개월 이상의 상시적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여 지원대상 자녀의 성장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 ⑤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⑥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⑦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함
자료: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참고 및 현행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이 되었으나, 현행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개정으로 2022. 8.16.부터는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로 지급대상이 확대된 바 있음.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021년	300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자녀수: 510명, 지원금액: 246
2022년	1,60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자녀수: 778명, 지원금액: 1,560
2023년	1,601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자녀수: 953명, 지원금액: 1,547

자료: 여성가족부

그런데 한시적 긴급지원의 경우 소득기준 제한⁶⁾과 한시적 지원⁷⁾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 중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은 72.1%로 여전히 높으며⁸⁾, 한국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네 번째로 높은 47.7%(OECD 평균 31.9%)로 일반가족의 아동빈곤율(10.7%)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는⁹⁾ 등 최근 한부모가족 및 아동 빈곤화가 문제됨에 따라 양육비 문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국가가 법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여 미성년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임.

6)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7) 최대 12개월(「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8)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2021.12, 241쪽.

9) 허민숙, “미혼부모·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실태와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2.8, 16쪽.

양육비 미확보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와 복리를 위협할 뿐 아니라 한부모가정의 빈곤화로 이어져 장래에 더 큰 복지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봄.

다만, 긴급지원되는 양육비는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할 것을 전제로 지원되는데, 2023년 12월 말 기준 양육비 긴급지원의 환수율이 15.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가족부로 하여금 양육비 환수율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양육비 긴급지원 회수율 >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회수율	-	-	0	1.18	1.09	5.05	9.29	12.72	15.36

자료: 여성가족부

참고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일정 소득 이하 또는 모든 양육비 채권 소유자 가구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지급액은 양육비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의 양육비 선지급(대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7건¹⁰⁾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이 법률안의 처리상황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10) 양육비 선지급(대지급) 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2024.8.30. 기준)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6건 (김남희의원안·황명선의의원안·김미애의원안·서영교의원안·임미애의원안·김한규의원안)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박홍근 의원안)

3.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 산정방식 변경

개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을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 금액은 <u>제5조에 따른 양육비 가이드라인</u> 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14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④ ----- ----- -. ----- <u>제5조 제2항-----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한다.</u>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기본적인 의식주 비용 외에 교육비, 의료비, 여가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임.¹¹⁾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보면, 이혼 이전과 동일 수준의 양육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표준 양육비를 결정한 후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 부

11)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몇몇 법령에서 아동양육비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나 아동양육비의 구체적 개념,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현행 「민법」에서도 양육비 개념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고 있으나 「민법」 제913조에서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 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에 비추어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는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임.

모의 재산상황 및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²⁾

반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현행법 시행령 제8조제3항¹³⁾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개정안은 법원의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결정과 같이 부모의 소득, 자녀 연령,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발생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제적 곤란을 방지하고 양육 지원을 위하여 국가가 자녀 양육을 위한 최소비용을 지원하고, 긴급지원 이후

12) 서울가정법원은 자녀 양육비 산정기준의 기본원칙으로, ①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②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함을 두고 있음(참고자료 참조).

1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양육비 채권자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와 그 가족의 장애 여부, 질환 유무, 생활수준, 그 밖의 긴급지원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의 대상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긴급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 긴급지원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 ⑥ (생략)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제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는 법원에서 이혼 전 동일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책정하는 양육비와는 목적과 성격이 달라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에 적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참고로, 자녀의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두고 있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에서도 대지급 수당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성가족부는 개정안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병행하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1.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합산 소득	0~ 199만 원	200~ 299만 원	300~ 399만 원	400~ 499만 원	500~ 599만 원	600~ 699만 원	700~ 799만 원	800~ 899만 원	900~ 999만 원	1,000~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자녀 연 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621,000 264,000~ 686,000	752,000 687,000~ 848,000	945,000 849,000~ 1,021,000	1,098,000 1,022,000~ 1,171,000	1,245,000 1,172,000~ 1,323,000	1,401,000 1,324,000~ 1,491,000	1,582,000 1,492,000~ 1,685,000	1,789,000 1,688,000~ 1,893,000	1,997,000 1,894,000~ 2,048,000	2,095,000 2,047,000~ 2,151,000	2,207,000 2,152,000 이상
3~5세	631,000 268,000~ 695,000	759,000 696,000~ 854,000	949,000 855,000~ 1,031,000	1,113,000 1,032,000~ 1,189,000	1,266,000 1,190,000~ 1,344,000	1,422,000 1,345,000~ 1,510,000	1,598,000 1,511,000~ 1,702,000	1,807,000 1,703,000~ 1,912,000	2,017,000 1,913,000~ 2,068,000	2,116,000 2,067,000~ 2,180,000	2,245,000 2,181,000 이상
6~8세	648,000 272,000~ 707,000	767,000 708,000~ 863,000	959,000 864,000~ 1,049,000	1,140,000 1,050,000~ 1,218,000	1,292,000 1,217,000~ 1,385,000	1,479,000 1,388,000~ 1,548,000	1,614,000 1,547,000~ 1,732,000	1,850,000 1,733,000~ 1,957,000	2,065,000 1,958,000~ 2,101,000	2,137,000 2,102,000~ 2,224,000	2,312,000 2,22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 724,000	782,000 725,000~ 885,000	988,000 886,000~ 1,075,000	1,163,000 1,076,000~ 1,240,000	1,318,000 1,241,000~ 1,406,000	1,494,000 1,407,000~ 1,582,000	1,630,000 1,563,000~ 1,758,000	1,887,000 1,759,000~ 2,012,000	2,137,000 2,013,000~ 2,158,000	2,180,000 2,159,000~ 2,292,000	2,405,000 2,293,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 734,000	790,000 735,000~ 894,000	998,000 895,000~ 1,139,000	1,280,000 1,140,000~ 1,351,000	1,423,000 1,352,000~ 1,510,000	1,598,000 1,511,000~ 1,654,000	1,711,000 1,655,000~ 1,847,000	1,984,000 1,848,000~ 2,071,000	2,159,000 2,072,000~ 2,191,000	2,223,000 2,192,000~ 2,349,000	2,476,000 2,350,000 이상
15~18세	703,000 319,000~ 830,000	957,000 831,000~ 1,092,000	1,227,000 1,093,000~ 1,314,000	1,402,000 1,315,000~ 1,503,000	1,604,000 1,504,000~ 1,699,000	1,794,000 1,700,000~ 1,879,000	1,964,000 1,880,000~ 2,063,000	2,163,000 2,064,000~ 2,204,000	2,246,000 2,205,000~ 2,393,000	2,540,000 2,394,000~ 2,711,000	2,883,000 2,712,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기본원칙

- 1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함
- 2 부모는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산정기준표 설명

- 1 산정기준표의 표준양육비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 기준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임
- 2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수입,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임
- 3 표준양육비에 아래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 있음
 - 1) 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 2) 자녀의 거주지역(도시 지역은 가산, 농어촌 지역 등은 감산)
 - 3) 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감산)
 - 4) 고액의 치료비
 - 5) 고액의 교육비(부모가 합의하였거나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 6) 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 가.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인 딸 1인, 만 8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 나.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180만 원, 비양육자 270만 원, 합산소득 450만 원

부모합산 소득	0~ 199만 원	200~ 299만 원	300~ 399만 원	400~ 499만 원	500~ 599만 원	600~ 699만 원	700~ 799만 원	800~ 899만 원	900~ 999만 원	1,000~ 1,199만 원	1,200만 원 이상
자녀 연 나이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평균양육비(원) 양육비 구간
0~2세	621,000 264,000~ 686,000	752,000 687,000~ 848,000	945,000 849,000~ 1,021,000	1,178,000 1,120,000~ 1,170,000	1,245,000 1,172,000~ 1,323,000	1,401,000 1,324,000~ 1,481,000	1,582,000 1,482,000~ 1,685,000	1,789,000 1,686,000~ 1,893,000	1,997,000 1,894,000~ 2,046,000	2,095,000 2,047,000~ 2,151,000	2,207,000 이상
3~5세	631,000 268,000~ 695,000	759,000 696,000~ 854,000	949,000 855,000~ 1,031,000	1,113,000 1,020,000~ 1,189,000	1,266,000 1,190,000~ 1,345,000	1,422,000 1,345,000~ 1,511,000	1,598,000 1,511,000~ 1,702,000	1,807,000 1,703,000~ 1,912,000	2,017,000 1,913,000~ 2,086,000	2,116,000 2,067,000~ 2,180,000	2,245,000 이상
6~8세	667,000 272,000~ 707,000	782,000 708,000~ 863,000	988,000 864,000~ 1,049,000	1,140,000 1,050,000~ 1,216,000	1,318,000 1,217,000~ 1,385,000	1,494,000 1,386,000~ 1,548,000	1,630,000 1,547,000~ 1,732,000	1,887,000 1,733,000~ 1,957,000	2,137,000 1,958,000~ 2,101,000	2,180,000 2,102,000~ 2,224,000	2,405,000 이상
9~11세	667,000 281,000~ 724,000	782,000 725,000~ 885,000	988,000 886,000~ 1,075,000	1,163,000 1,078,000~ 1,240,000	1,318,000 1,241,000~ 1,408,000	1,494,000 1,407,000~ 1,562,000	1,630,000 1,563,000~ 1,758,000	1,887,000 1,759,000~ 2,012,000	2,137,000 2,013,000~ 2,158,000	2,180,000 2,159,000~ 2,282,000	2,405,000 이상
12~14세	679,000 295,000~ 734,000	790,000 735,000~ 894,000	998,000 895,000~ 1,139,000	1,280,000 1,140,000~ 1,354,000	1,423,000 1,352,000~ 1,511,000	1,598,000 1,511,000~ 1,655,000	1,711,000 1,655,000~ 1,847,000	1,984,000 1,848,000~ 2,071,000	2,159,000 2,072,000~ 2,191,000	2,223,000 2,192,000~ 2,349,000	2,476,000 이상
15~18세	679,000 319,000~ 830,000	790,000 831,000~ 1,092,000	998,000 1,093,000~ 1,314,000	1,280,000 1,315,000~ 1,503,000	1,423,000 1,504,000~ 1,699,000	1,598,000 1,700,000~ 1,879,000	1,711,000 1,880,000~ 2,063,000	1,984,000 2,084,000~ 2,204,000	2,159,000 2,205,000~ 2,393,000	2,223,000 2,384,000~ 2,711,000	2,476,000 이상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1. 표준양육비 결정

- 가. 딸의 표준양육비 : 1,402,000원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나. 아들의 표준양육비 : 1,140,000원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합산소득 400만 원~499만 원의 교차구간)
- 다.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542,000원(= 1,402,000원 + 1,140,000원)

2.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있다면 결정된 표준양육비에 이를 고려하여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 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3.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0%(= 270만 원 / (180만 원+270만 원))

4.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525,200원(= 2,542,000원 × 60%)

자료: 서울가정법원

[참고자료] 2. 양육비 대지급수당 주요 해외 사례

구분	독일	스웨덴	핀란드
대지급수당	• 6세미만(월 26만원) • 6세~12세(월 35만원) • 12세~17세(월 47만원)	• 7세미만(월 21만원) • 7세~14세(월 23만원) • 15세 이후(월 28만원)	월 26만원
소득구분 여부	• 11세까지 보편적 수당, • 12세부터 17세까지 저소득	보편적 수당	보편적 수당
구상 여부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	구상권 행사
이행강제 조치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	정부기관이 회수	국가기관의 강제이행

자료: 국회입법조사처, ‘양육비 대지급제 해외 운영사례: 아동빈곤 해소와 양육비 이행 강화의 두 가지 기대효과’, “NARS 현안분석”, 2023.5.을 재구성